

'25년 「중소기업 채용관리솔루션 지원사업」 이용기업 모집 공고

2025년도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채용관리솔루션 지원사업」
민간위탁사업에 대하여 불임과 같이 이용기업을 모집하오니,
해당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장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전 반드시 상세공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5. 3. 26.

(사)한국능률협회 상근부회장

[붙임1]

중소기업 채용관리솔루션 지원사업 이용기업 모집 공고

KMA

I. 사업 개요

- **[목적]** 중소기업이 채용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효율적으로 채용 업무를 운영할 수 있도록 채용관리솔루션(ATS)* 도입 지원

* AI 등을 통한 채용업무 프로세스 전산화 시스템(Applicant Tracking System)

** 주요기능: 채용홈페이지/채용공고문 제작 지원(채용절차법 등 채용 관련 법 필터링 등), 지원서 관리, 채용일정 관리·안내(서류 접수 통지, 합격/불합격 통지, 불합격 사유 피드백)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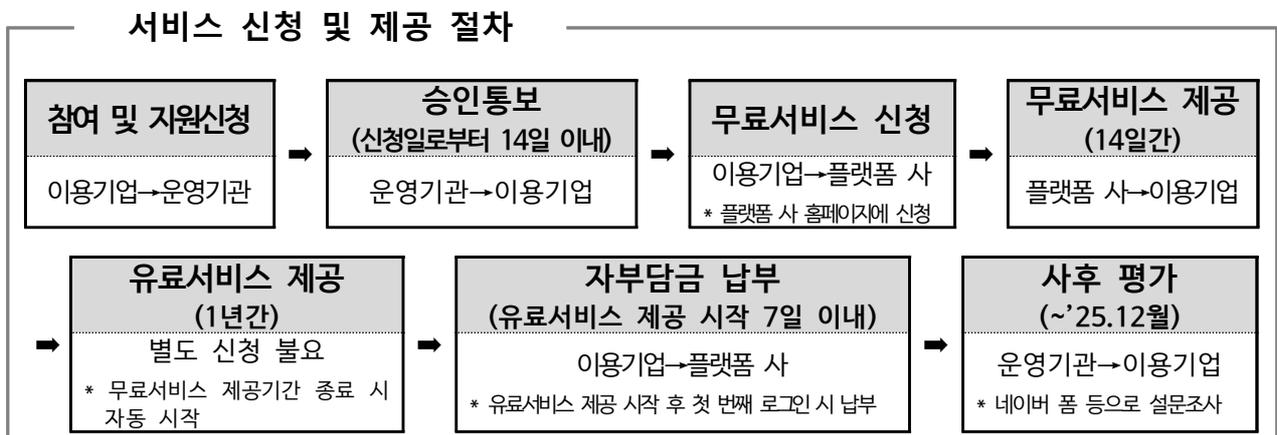
- **[지원대상]** 채용관리솔루션(ATS)을 신규 도입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요건) 신청일 전 12개월 이내 ❶ 고용24(워크넷 포함) 알선 서비스 및 ❷ 이 사업의 서비스 제공기업으로 선정된 플랫폼 사의 ATS 유료 서비스를 사용한 이력이 없고, ❸ 신청일 현재 고용24에 가입된 중소기업

- **[지원규모]** 기업 4,000개소(지원 규모 충족 시 신청 마감)

- **[지원내용]** 공모를 통해 선정된 플랫폼 사의 ATS를 도입·활용한 기업에 ATS 서비스 사용료의 80%(최대 40만원, 자부담 20%) 지원

- **[지원요건]** 지원자 접수(1단계) - 지원자관리(2단계) - 면접 및 평가(3단계) 등 채용과정 각 단계별 1회 이상 이용기록이 있는 경우 지원



II. 지원 대상

1. 지원 대상 사업주

- ATS를 신규 도입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중견·대기업 제외)으로,
 - 사업 신청일 전 12개월 이내 ① 고용24(워크넷 포함) 알선 서비스 및 ② 이 사업의 서비스 제공기업으로 선정된 플랫폼 사의 ATS 유료 서비스를 사용한 이력이 없고, ③ 신청일 현재 고용24에 가입된 사업주
- * 사업신청서 작성 후 지원대상 승인일로부터 14일 이내 플랫폼 사를 변경한 경우에도 최초 신청서 접수일 전날부터 12개월 이내를 기준으로 판단함

2. 지원 제외 사업주

2-1 소비·향락업 등 업종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주
- * 일반유희 주점업, 무도유희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2-2 이용기업이 아닌 타 사업장에 채용할 목적으로 ATS 서비스(전용상품)를 이용하는 경우

- * (예시) A 사업장 명의로 채용 공고하였으나 실제로는 B 사업장(하청업체 등)에 채용하는 경우

2-3 국가 및 공공기관 등

- ①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 ②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행정기관
- ③ 「국회법」에 따른 국회, 「법원조직법」에 따른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 ④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매년 인사혁신처장 고시)

* 한국은행, 공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정부 또는 지자체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정부 또는 지자체의 출자·출연을 받은 기관·단체가 재출자·재출연한 기관, 임원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의 장이 선임·임명·위촉하거나 승인·동의·추천·제청하는 기관·단체

⑤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 급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기관

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은 알리오시스템(www.alio.go.kr)을 통해서 확인 가능하며,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를 통해 확인 가능

2-4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확인 방법) 고용노동부 누리집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 (제외 기간) 명단 공개 기간 내에 신청서를 접수한 사업주는 지원 불가

2-5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기업

* 중대재해 발생 기업은 '24.12.19. 고용노동부에서 공표(고용노동부 공고 제 2024-490호)하고 있는 기업으로 동 사업 참여 제한

** (확인 방법) 고용노동부 누리집 > 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목록 > 산재예방/산재보상 >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 공표

III. 지원 내용

1. 무료서비스 제공

(지원 조건) 운영기관(한국능률협회)의 승인통보 후 지원신청 가능

(신청 방법) 플랫폼 사에 무료서비스 신청

(제공 기간) 무료서비스를 신청한 날로부터 14일간 제공

* 승인일로부터 7일 이내 무료서비스 미신청 시 지원 승인은 취소됨

- (플랫폼 사 변경) 이용기업은 지원대상 승인일로부터 14일 이내 플랫폼 사 변경 가능
 - 지원대상 승인일로부터 14일 이후에는 플랫폼 사를 변경할 수 없으며, 플랫폼 사를 변경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2. 유료서비스 제공

- (신청 방법) 무료서비스 기간(14일) 종료 익일부터 별도 신청 없이 제공
- (자부담금 납부) 무료서비스 제공기간 종료 익일로부터 7일 이내 납부
 - 이용기업이 플랫폼 사에 납부
 - 무료서비스 제공기간 종료 익일로부터 7일 이내 자부담금 미납 시 서비스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보고 지원 승인은 취소됨
- (제공 기간) 무료서비스 제공기간 종료 익일로부터 1년간 제공
 - 플랫폼 사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플랫폼 사에 무료서비스를 신청한 후 14일(무료서비스 제공기간)이 지난 날로부터 1년간 유료서비스 제공
 - 유료서비스 제공기간 이후부터 '25.11.30.까지 ATS 서비스(전용상품) 이용이력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25.11.30.까지만 유료 서비스 제공하며 기납부된 기업 자부담금은 반납하지 않음*
 - * 단, 나머지 기간에 대해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사업장은 추가 비용을 플랫폼 사에 납부하고 개별 계약을 통해 이용 가능
 - 유료서비스 제공기간 시작 이후 이용기업이 서비스 이용을 취소한 경우에도 기납부된 기업 자부담금은 반납하지 않음

3. 지원금

- (지원 내용) 기업당 플랫폼 사가 제공하는 ATS 서비스(전용상품) 이용료의 80%를 연 최대 40만원 한도로 지원
 - 지원 수준 및 한도를 넘는 ATS 서비스 이용료는 기업 자체 부담
- (지원 방법) 사업참여 및 지원 신청 후 지원 대상으로 승인 통보된 이용기업에 대해 플랫폼 사가 연간 이용료에서 지원금액을 차감

- 참여 및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이용기업은 지원금액을 차감한 자부담금만 납부하는 대신, 플랫폼 사가 이용기업에 대한 지원금액을 신청하여 수령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봄
- 사업지원 대상으로 승인 통보된 사업장은 각 플랫폼 사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한 후 ATS 서비스(전용상품)를 선택하고 이용

IV. 지원 요건

- 지원대상 사업주로서 유료서비스 제공 기간 이후부터 '25.11.30.까지 이용기업에서 선택한 플랫폼 사의 ATS 서비스(전용상품)를 지원자 접수(1단계) - 지원자 관리(2단계) - 면접 및 평가 관리(3단계) 등 채용 과정* 각 단계별로 각 1회 이상 이용한 기록이 있어야 함
 - * 채용 과정 각 단계 구분은 플랫폼 사 ATS 전용상품 안내문 참조(붙임2, 3)
 - * '25.11.30까지 지원자 접수(1단계) - 지원자 관리(2단계) - 면접 및 평가 관리(3단계)의 이용 이력이 적어도 각 1회 이상 모두 있어야 함
- 지원 대상이 되는 ATS 서비스는 플랫폼사와 약정체결 시 플랫폼사가 제공하기로 약정한 서비스(전용상품)에 한함
 - ※ 약정된 전용상품 이외에 플랫폼사가 제공하는 유료서비스는 지원하지 않음
- 참여신청서 작성 시 지정한 플랫폼사를 다른 플랫폼사로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플랫폼사의 ATS 유료 서비스(전용상품)를 활용한 이력이 있어야 함

V. 신청 및 선정

□ (신청 기간) '25. 3. 26.(수) ~ '25. 10. 31.(금)

* '25년 사업 목표(4,000개소) 달성으로 인한 사업 조기 마감 시 사업 마감일까지

□ (신청 주체) ATS 서비스(전용상품)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

○ 사업참여 및 지원신청서는 사업 단위로 제출

○ 대표자가 같은 다수 기업(법인, 사업체)은 1개 기업만 이용기업으로 신청할 수 있음

* 채용 절차가 사업장 단위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대표자나 법인등록번호가 같은 사업장은 신청·지원이 불가

□ (신청 방법) 한국능률협회 누리집(<https://www.hrd.kma.or.kr/ats>)을 통해 온라인 제출

□ (제출 서류) ① 이용기업 참여 및 지원 신청서<서식 1>, 개인정보 활용에 관한 동의서<서식 2>, 지원요건 충족 여부 등 확인서<서식 3>, 중소기업 확인서*, 고용산재보험가입증명원** 등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 증명원 신청/발급 → 보험가입 증명원(40101) 신청 → 발급

□ 선정 방법

○ 모집공고문과 지침에 따라 (사)한국능률협회에서 이용기업 심사 및 선정

□ 선정 취소

○ 운영기관은 선정된 이용기업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취소,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부여할 수 있음.

1. 신청 당시 지침의 신청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선정된 이후 발견한 경우

2. 고의로 사업지원금을 횡령, 편취하거나 유용한 경우
3. 기타 신청 당시 공고문의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사실을 선정된 이후 발견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고용노동부 및 운영기관의 점검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5. 고용노동부 및 운영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각종 증빙서류 등에 대하여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6. 기타 운영기관에서 선정취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VI. 기타 안내

□ 준수사항

- (이용기업의 의무) ❶ 이용기업은 관련 법령, 지침, 공고문을 준수하여야 함
 - ❷ 이용기업은 플랫폼 사의 서비스 상품을 성실하게 이용하여야 함
 - ❸ 이용기업은 고용노동부 또는 운영기관의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함
 - ❹ 이용기업은 플랫폼 사의 서비스 상품 이용실적 수집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협조하여야 함
 - ❺ 이용기업은 최초 선정 당시의 기업 유지를 위해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운영기관과 플랫폼 사에 통보하여야 함
 - ❻ 이용기업은 사업효과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참여시, 참여 종료시 각 1회) 등 운영기관 또는 플랫폼 사가 요청하는 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변경사항 보고) ❶ 이용기업은 변경사항(대표자, 법인전환, 휴·폐업, 서비스 사용 주체 등)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지체없이 변경사항을 운영기관 및 플랫폼 사에 통지하여야 함
 - ❷ 제1항과 관련하여 변경사항을 보고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이용기업이 자체 부담하여야 함

□ 이용기업 점검

- ① 고용노동부 및 운영기관은 이용기업에게 서비스 활용 내역 등을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
- ② 고용노동부 또는 운영기관은 이용기업의 부정행위 또는 제공 서비스의 품질 등에 대한 신고 또는 불만이 접수될 시 점검반을 구성하여 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 ③ 이용기업이 정당한 사유없이 점검을 거부하거나, 자료제출 요청에 불응하는 등 점검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운영기관은 선정취소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음

□ 문의처: 02) 3274-9279 (한국능률협회 일자리창출본부 김현재 전문위원)
02) 3274-9295 (한국능률협회 일자리창출본부 신일섭 연구원)

개인정보 활용에 관한 동의서(필수)

성명 :
주민등록번호 :

1. “중소기업 채용관리 솔루션 지원사업” 참여에 있어 개인(법인) 사업주를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 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수집·관리하고 있으며, 제공하신 정보는 사업참여 신청 적격 여부 확인 등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용됩니다.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본인 확인, 참여 적격요건 확인, 지원금 지급 요건 확인, 부정수급 점검, 사업참여 만족도 조사 및 외부 기관 리서치 등 ‘채용관리 솔루션 지원사업’ 운영과 관련된 사항 등	신청 시점 ~ 지원 종료 시점으로부터 만 5년

2. “중소기업 채용관리 솔루션 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가 필요하며,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11조 제3호 및 제12호를 근거로 수집하며, 고용노동부와 운영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참여자로부터 제공 받는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3. 고용노동부와 운영기관은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하고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를 제공한 신청자는 언제나 자신이 입력한 개인정보의 열람·수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으며 만약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인 이 직접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본인은 위 1~4의 내용에 따른 “중소기업 채용관리 솔루션 지원사업” 참여·운영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사업장 정보 제3자 제공동의서(필수)

1. “중소기업 채용관리 솔루션 지원사업” 참여시 제출한 사업장 정보(사업장명, 사업자 등록번호, 연락처 등)를 지원요건* 확인을 위해 한국고용정보원, 플랫폼 사에 제공하는 데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 고용24(워크넷 포함) 가입 여부 및 알선서비스 이용 이력, ATS 서비스 이용이력

2. 신청자는 사업장 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으며 만약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업 홍보 및 안내 동의서(필수)

1. 고용노동부(고용센터)의 고용24 회원가입 및 채용지원사업 등에 대한 안내 및 홍보를 위해 “중소기업 채용관리 솔루션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정보를 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2. 신청자는 사업 홍보 및 안내에 동의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으며 만약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업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동의자 :

고용노동부 장관/(사)한국능률협회 귀하

지원요건 충족 여부 등 확인서

■ 신청기업 개요

사업장명		대표자명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 확인내용

확인사항	해당 여부 (해당되는 곳에√표)
① 서비스 제공기업으로 선정된 플랫폼 사의 ATS 서비스를 신청서 접수일 전 12개월 이내 유료로 사용한 사업주	[] 해당 [] 비해당
② 고용24(워크넷 포함)의 알선서비스를 신청서 접수일 전 12개월 이내 이용한 이력이 있는 사업주	[] 해당 [] 비해당
③ 고용24에 회원 가입되지 않은 사업주 ※ 고용24 미가입 사업주는 반드시 회원가입 후 참여 가능	[] 해당 [] 비해당
④ 주된 업종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일반유희주점업', '무도유희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에 해당하는 사업주	[] 해당 [] 비해당
⑤ 국가 및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사업주	[] 해당 [] 비해당
⑥ 임금체불 중 또는 임금체불로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 확인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 해당 [] 비해당
⑦ 「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주 ※ 확인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표목록 → 산재예방/산재보상 →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 공표	[] 해당 [] 비해당
⑧ 이 사업에 기존에 참여한 적이 있는 사업주(개인은 대표자 기준,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기준) ※ 개인 사업자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기준으로, 법인 사업자는 법인등록번호 기준으로 1개 사업자만 신청 가능	[] 해당 [] 비해당
⑨ 이용기업이 아닌 타 사업장에 채용 목적으로 ATS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업주 ※ (예시) A사업장 명의로 채용 공고하였으나 실제로는 B사업장(하청업체 등)에 채용하는 경우	[] 해당 [] 비해당

본인은 '25.11.30까지 ATS 서비스(전용상품)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ATS 서비스(전용상품) 제공은 중단되며 기업 자부담금도 반환되지 않음을 안내받았습니다.

* 지원자 접수, 지원자 관리, 면접·평가 관리 각 단계별 1회 이상 이용이력 등

[] 예 [] 아니오

본인은 위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자의 경우에는 지원금 반환명령, 약정해지, 재참여 제한, 서비스 제공 중단 등의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예 [] 아니오
년 월 일

확인자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사)한국능률협회 귀중

